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212

발의연월일 : 2026년 1월

발 의 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활동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, 주민 참여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행정안전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규정 신설(안 제5조 후단)

나.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으로 추가 규정(안 제11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활동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, 시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5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 4. (생 략)	제11조(기능) ---------- 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활동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